
금융소비자보호법 FAQ 답변 (3차)

2021. 4. 26.

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

목 차

I. 불공정영업행위 관련

1. 금소법상 ‘연대보증’의 범위 1
2.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보증은 가능한지? 1
3. 부동산 프로젝트금융 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가능여부 1
4. 법인 집단대출에 대한 시공사 연대보증 가능여부 1
5. 연대보증 규정 위반여부 판단 시기 2
6. ‘사실상 동일한 계약’ 및 금소법 적용 시점 판단기준 2

II. 특정 영업행위의 ‘권유’여부 판단 관련

1. 퇴직연금에 대한 영업규제 적용 관련 이슈 3
2. 자동차보험, 실손의료보험 갱신의 법적 성격 4
3. 소비자군별 금융상품 안내가 권유에 해당하는지? 4

III. 청약철회권

1.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 관계 5
2. 증권사 신용공여의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 6

IV. 기 타

1.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의 업무범위 7
2.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‘전자서명’의 범위 7

1. 불공정영업행위 관련

1. 연대보증을 대신하여 실무상 운영하는 자금보충, 조건부채무 인수약정이 ‘연대보증 금지’ 에 위반되지 않는지?

2. 연대보증이 아닌 일반 보증은 가능한지?

- 금소법상 연대보증이란, 그 형식이나 명칭에 관계 없이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증인이 그 채무를 이행하기로 하는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계약 中,
- 민법 제437조 본문에 따른 최고·검색의 항변권 및 민법 제439조에 따른 분별의 이익이 배제되는 계약을 의미합니다.

3. 부동산 프로젝트금융의 경우 해당 사업 차주인 법인에 대해 시공사가 연대보증을 할 수 있는지?

- 시공사는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(§14①2호)에 따라 연대보증이 허용되는 ‘프로젝트금융 사업*에 따른 이익을 차주와 공유하는 법인’으로 보아 연대보증을 할 수 있음

* 차주가 특수목적법인(SPC)인 경우로 한정하지 않음

4. 법인을 대상으로 한 분양사업(예: 아파트형 공장 등) 관련 집단 대출의 경우에도 개인과 같이 시공사 연대보증이 가능한지?

- 법인 집단대출의 성격이 개인 집단대출과 거의 동일하며,
- 개인에 허용되는 사항을 법인에 허용하지 않을 경우 법인의 연대보증 범위가 오히려 개인보다 좁아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하여 법인에도 집단대출 연대보증을 허용

**5. 금소법 시행 이전 체결한 대출 계약에 연대보증이 있는 경우
금소법 위반인지?**

- 법 시행일 이후에 체결된 계약부터 금소법을 적용
 - 만약, 법 시행일 이전 소비자가 대출 청약을 하고 해당 청약에 대한 금융회사의 승낙이 법 시행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이 이루어진 시점을 기준으로 위반여부를 판단

6. 감독규정(§ 14⑥9호)에서는 기존 대출계약을 해지하고 그 계약과 ‘사실상 동일한 계약’ 을 체결한 후 기존 계약과 신규 계약의 유지기간을 합해 3년*이 넘었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위를 금지하는데,

* 금소법에서는 원칙상 계약성립일부터 3년 도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

- 1. 신규 계약의 대출금액이 기존 계약보다 큰 경우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볼 수 있는지?
- 2. 금소법 적용시점을 ‘기존 대출계약’ 시점으로 보는지?

- (6-1) 대출금액은 대출계약의 중요 내용에 해당하므로 대출금액의 변경이 있다면 ‘사실상 동일한 계약’으로 볼 수 없음
- (6-2) 금소법 적용여부는 기존 대출계약 체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

II. 특정 영업행위의 '권유' 여부 판단 관련

1. 퇴직연금 관련

- 1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상의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소비자와의 계약에서 금소법상 규제를 준수한 경우에도 같은 법상 자산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해야 하는지?
- 2.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에서는 판매자가 퇴직연금 가입자에게 반기마다 위험과 수익구조가 다른 세 가지 이상의 상품을 제시 하도록 하는데 이는 부적합한 상품 권유를 금지하는 금소법상 적합성 원칙과 충돌 아닌지?

- (1-1) 퇴직연금제도의 특성상 실질적으로 소비자에 금융상품을 권유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자는 운용관리업무 수행자이며,
 -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계약이 체결된 소비자의 재산을 보관·관리하는 역할에 불과하므로 규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는 것이 소비자 권익에 부합
- 운용관리업무 수행자가 규제를 준수하는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자는 규제 미적용
- (1-2) 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」상 운용관리기관의 '상품제시'는 모든 가입자에 동일한 상품목록이 제공되는 경우에 한하여 「금융소비자보호법」상 '권유'로 보지 않음
 - 이 경우 상품목록은 운용관리기관의 주관적 기준이 아닌 '가나다 순' 또는 '수익률' 등 객관적 지표를 기준으로 제공될 필요

2. 자동차보험 갱신, 실손의료보험 갱신도 금융상품의 권유인지?

- 보험상품의 경우, 권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음
- 자동차보험의 경우 통상 매년 보험사가 계약 갱신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이 새로 체결되므로 해당 갱신여부 확인절차를 권유로 볼 수 있음
- ※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무보험이라는 특성 및 소비자 편의성 등을 감안하여 변경된 중요사항을 설명하면 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음. 다만,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기타 중요사항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
- 반면, 실손의료보험의 경우 보험료 등이 변경되는 것으로서, 매년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는 않으므로 권유행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

3. 소비자군을 분류하여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행위가 권유에 해당하는지?

- 원칙적으로 “권유”란 특정 소비자로 하여금 특정 금융상품에 대해 청약의사를 표시하도록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,
 - 광고란, 사업자가 자기 또는 다른 사업자의 상품 또는 용역의 내용, 거래조건,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신문, 방송, 전기통신 등을 통해 소비자에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행위임
- 사실상 불특정 다수로 볼 수 있을 정도로 연령이나 특정 소득 계층을 기준으로 포괄 분류된 소비자군에 대해 동일한 정보를 알리는 행위는 “광고”에 해당
 - 그러나 다양한 정보의 조합을 통해 소비자군을 세분화하여 사실상 특정 소비자에 맞춤형으로 상품정보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“권유”로 판단 가능

Ⅲ. 청약철회권

1. 청약철회권과 자본시장법령상 투자자 숙려제도 간의 관계는?

- 투자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는 계약체결일 또는 계약서류 수령일부터 7일내 가능

- ※ 청약철회가 가능한 투자성 상품(일반금융소비자에만 적용되며, 청약 시 소비자가 철회가능 기간 내에 판매자가 금전 등을 운용하는데 동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)
 - 비금전신탁계약
 - 고난도 금융투자상품(일정기간에만 소비자를 모집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펀드만 해당)
 - 고난도 금전신탁계약 및 고난도 투자일임계약

- 청약철회권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상 투자자 숙려제도가 함께 적용되는 투자성 상품의 경우에는,
 - 청약일 다음날부터 숙려기간인 2영업일이 지난 후 계약이 체결되면 그 계약체결일(또는 계약서류 수령일) 다음날부터 7일(영업일 아님) 이내 철회권 행사가 가능

2. 증권사 신용공여(자본시장법 §72①)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?

- 대출성 상품의 경우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① 원칙적으로 계약서류를 받은 날이며,
 - ② 계약서류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고,
 - 계약에 따른 ③ 금전 등이 늦게 지급된 경우에는 그 지급일
- ※ 증권사 신용공여의 경우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도 담보로 제공된 증권이 처분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됨
- 증권사 신용공여(자본시장법 §72①)는 계약체결 후 금전지급일이 소비자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특성을 고려할 필요
 - 금소법 제46조제1항제3호 각 목 외 부분인 ③ “금전 등의 지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”의 적용이 곤란
- 따라서 증권사 신용공여 시 청약철회권 행사 기산점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 또는 계약체결일로 볼 수 있음

IV. 기 타

1.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 별표2의 ‘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업무수행 임원’ 을 별도로 두는 경우 감독규정상 금융소비자 보호 총괄기관 업무 외 다른 업무 수행은 불가능한지?

- 금융소비자보호 감독규정(별표2 비고 제2호)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 담당 임원은 해당 기관의 업무를 전담하도록 규정
- 다만, 감독규정에 열거된 금융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의 업무는 예시적 사항이므로,
 - 그 외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소비자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한 업무를 추가하는 것도 가능

2. 적합성원칙 및 설명의무 확인 방식인 ‘전자서명’ 에 휴대폰 인증, PIN(Personal Identification Number) 인증, 신용카드 인증도 허용되는지?

- 「전자서명법」 상 전자서명에 해당하는 경우 허용 가능

(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) “전자서명”이란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나타내는 데 이용하기 위하여 전자문서에 첨부되거나 논리적으로 결합된 전자적 형태의 정보를 말한다.

가. 서명자의 신원

나. 서명자가 해당 전자문서에 서명하였다는 사실

- 개별 인증방식이 「전자서명법」 상 전자서명에 부합하는지는 법리보다 전산 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므로 인터넷진흥원 전자서명인증관리센터 등 전문기관과의 협의를 권고